

울산지방법원 2021. 3. 31 선고 2020가단10703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(변경 전 상호: B 주식회사)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1. 3. 10.

판결 선고 2021. 3. 3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19. 5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9. 5. 8. 접수 제655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소장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제1의 나. 항을 참조하면, 청구취지 제1의 가.항은 별지 목록
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D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신청을 받고 2019. 2. 18. D에게 4,5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, 이자율 연 10.9%, 연체이자율 연 13.9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
나. D은 4,500만 원의 대출금으로 중고자동차(벤츠 C220d)를 구입한 다음 2019. 2.19. 원고 앞으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,2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.

다. 그러나 D은 2019년 5월부터 위 차용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. 8.21.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2020. 4. 6.을 기준으로 D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대출원금 43,860,013원, 이자 3,927,658원, 법적비용 2,983,818원 등 합계50,771,489원이다(= 43,860,013원 + 3,927,658원 + 2,983,818원).

라. 한편,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2019. 5. 1.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8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D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

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연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.5. 1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향후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.

3. 판단

가. 인정사실

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3, 6호증, 갑 제7호증의 1, 갑 제8호증의 1, 2, 갑 제9호증의 2, 갑 제10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(1)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적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(적극재산 합계: 196,800,000원).

① 이 사건 부동산(1/2 지분 가액임): 128,000,000원

②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임야 2,380㎡: 23,800,000원

③ 벤츠 C220d(2016년식): 45,000,000원(취득가액)

(2)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소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(소극재산 합계: 263,786,242원, 아래 원고에 대한 차용금액에서 원고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가액 22,500,000원을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다).

① 원고에 대한 차용금지급채무: 43,282,242원(계산의 편의상 갑 제7호증의 1 중 2019. 5. 20.자 원금만을 기준으로 함)

② F회사에 대한 차용금지급채무: 44,504,000원

③ G은행에 대한 차용금지급채무: 160,000,000원

④ H에 대한 차용금지급채무(창원시 마산합포구 E 토지의 1번 근저당권자): 16,000,000원

나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, D과 피고가 법률상 부부인 점에 비추어 D은 이 사건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피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할 항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으로 선회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석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아파트 K동

[도로명주소]

울산 울주군 L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5층 공동주택(아파트)

1 내지 3층 각 403.8716㎡

4 내지 25층 각 394.2076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울산 울주군 I 대 45,878.5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4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4.9966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45,878.5분의 51.2777. 끝.